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1. 3. 3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2월 17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3. 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의 범위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·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의 범위에 단서 신설(안 제2조)
  -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 신설: “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

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”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제2호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인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봄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1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2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의 범위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·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의 범위에 단서 신설(안 제2조)

- 1)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 신설: “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”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 1. 14. ~ 2. 3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3. (생   략)</p> <p>② (생   략)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